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05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 백종헌・서천호・조경태

진종오 • 곽규택 • 정희용

이헌승 · 김용태 · 김상욱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23.8) 및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1) 일환으로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 및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없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설하려면"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심의"를 "사전심의 및 본심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과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 3. 제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개설 등) ① ~ ③ (생	제33조(개설 등)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	4
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	
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u>개설하</u>	<u>개설하려</u>
<u>려면</u>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면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u>심의</u> 를	<u>바에 따라</u> <u>사전심의</u>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u>및 본심의</u>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
	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
	<u>우</u>
<u><신 설></u>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병
	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
	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
	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
	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 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 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 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 항과 같다.

<u>⑥</u> ~ <u>⑩</u> (생 략)

바에 따라 시·도 의료기관개
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u>⑥</u> 제3항부터 제5항까지
<u>제3항부터 제5항</u>
<u>까지</u>
$\underline{7}$ \sim $\underline{\mathbb{1}}$ (현행 제 6 항부터 제 1
0항까지와 같음)